

# 북한의 법제 동향과 기업법제의 개편방향

박 찬 홍\*

- I. 서론
- II. 북한의 법제 동향
- III. 기업에 관한 인식과 기업관계 법령에 관한 검토
- IV. 북한 기업법제의 개편방향

## 국문요약

북한에서 외국인투자 확대와 남북 경제협력이 진척될 경우 국제정합성 요구 등에 따라 북한 기업 법제의 정비가 수반될 것이다. 남북 기업법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가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북한의 기업법제 이해 수준을 선행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법치관과 법제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기업법제의 개편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기업소법과 외국인투자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기업법제 개편방향을 전망하였다.

북한의 법치관, 특히 기업활동을 포함한 경제관련 법제영역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기업에 관해서도 기업의 생산성 증진 내지 외자유치를 위한 북한 당국의 실질적인 노력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기업소법과 외국인투자 및 특수경제지대법은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다양한 기업의 형태에 관한 일반규정

이 없고, 기업의 결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의 창설에 관한 규정 간의 체계 및 상호 관계가 모호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밖에 외국투자기업과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활성화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며, 기업의 권리와 관련한 규정도 명백한 사유 없이 각 법령 간에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기업법제는 공통 적용사항을 통합하고, 기업형태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되며, 외국투자 기업이 북한에서 경영활동을 활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도 보강되어야 한다. 입법기술적으로는 특수경제지대별로 두고 있는 개별법을 통합하고, 외국투자기업에 관한 통합법 제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주제어:** 북한의 법치주의, 북한법제 동향, 북한 기업법

\*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법학박사

## I. 서론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기였던 1980~199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은 해외자본 유치 노력을 가시화하였다. 특히 북한은 1990년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으로 표현되는 경제난을 겪으면서 국제사회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 보호법제 마련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2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하 “사회주의헌법”이라 한다) 제18조에서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의 의무를 선언하고, 국가의 법률제도 완비와 사회주의 범부생활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무렵 북한은 시장화(marketization) 현상에 따른 체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제특구정책 추진과 기업소의 생산증진을 통한 자본 확충에 힘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주의를 경계하는 북한에서 경제특구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었고, 핵심험과 같은 모험주의 정책,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에 따라 북한의 해외자본 유치성과는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북한은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여 발달한 기업제도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더러 기업법제의 정비도 미흡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한 자본축적도 기대하기 어렵다. 2010년 11월 전망성 없는 기업의 정리, 독립채산제, 종업원총회의 자치권 등을 명시한 ‘기업소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동법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계획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였고, 여전히 국제사회의 기업법제와 정합성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13년 5월 29일 북한은 경제특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였지만 북한 체제의 특수성, 법제도의 미흡으로 현재까지 그렇다 할만한 경제적 변화를 찾기 힘들다.

올해 3월 우리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5·24 조치로 경색되었던 남북 경제협력도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에서 기업을 배제할 수 없다. 본격적으로 외국인투자 확대와 남북 경제협력이 진척될 경우 국제정합성 요구 등에 따라 북한의 기업법제 정비가 수반될 것이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도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남북한의 기업법제 간 연계성 확보는 중요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만약 북한이 기업법제 정비과정에서 중국의 영향을 주로 받게 된다면 향후 기업법을 포함한 경제분야 법제의 통합을 구상하는데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sup>1</sup>

<sup>1</sup> 중국 회사법은 인적회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주식회사의 설립허가주의 채택, 국가의 간섭과다,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만 인정하는 등 우리 기업법제와의 차이에 따라(정용상, “중국 회사법의 총론적 검토,” 『외대논총』, Vol. 27 (부산외국어대학교, 2003), p. 15 참조) 북한이 중국

남북 간 기업법제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가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현행 기업법제의 수준을 선행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북 기업법제의 연계에 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부 북한의 기업법제와 관련한 기존연구들은 북한법 조문을 단편적으로 설명하거나, 독일 통일과정에서 기업제도의 소개, 기업에 관한 단행법 조문의 의미 해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에 관한 북한의 문헌을 폭넓게 분석하고, 기업소법과 그동안 북한이 제정한 외국인투자법을 확인함으로써 북한의 기업에 대한 인식과 기업법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결론에서 기업법제의 개편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북한의 법치관 변화와 일반법제의 제·개정 현황을 살펴본다. 북한이 전통적 입장의 사회주의적 법치관을 고수하거나, 법제 개편에 무관심한 상황이라면 기업법제의 개편방향을 연구하는 의미도 그 만큼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 II. 북한의 법제 동향

법치주의는 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을 마련하고 국가작용을 따르게 함으로써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자유·평등·정의 실현하려는 국가의 구조적 원리로 설명된다.<sup>2</sup> 이러한 법치주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법의 예측가능성, 법 집행의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가 제시되고 있다.<sup>3</sup>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해되며,<sup>4</sup> 공산주의사회 실현을 위한 전통적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관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사회주의국가의 전통적인 입장에 따르면, 법제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당의 정책실현의 도구에 불과할 뿐 당의 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이나 법 집행의 안정성을 지도하는 원리 차원에서 이해되지 않는다. 즉, 전통적 의미의 사회주의적 법치주의는 엄밀한 의미의 실질적 법치

법을 계수할 경우 이에 관한 재조정의 문제가 발생된다.

<sup>2</sup>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007), pp. 144~145 참조.

<sup>3</sup>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8), p. 97; 김철수, 『헌법학신론』 (서울: 박영사, 2009), p. 195; 성낙인, 『헌법학』 (서울: 법문사, 2008), p. 239; 허영, 위의 책, pp. 145~150 참조.

<sup>4</sup> 오늘날에는 법치주의가 당연히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 또는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합치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성낙인, 위의 책, p. 238).

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통적 사회주의국가의 법치관에 따라 북한 당국이 기존 법을 자의적으로 개정하거나 해석하여 집행하는 상황이라면 북한법제에 관한 연구는 북한의 정치현상을 파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실질적 법치주의원칙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법제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국제사회는 국가 간 투자, 교역 등에 있어서 법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안정성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유치와 교역 확대에 관심을 가져온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법치주의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의 법치관도 사회주의적 법치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 법치주의를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법치관 변화와 관련하여 북한이 처한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sup>5</sup> 따라서 이하에서는 북한의 환경 변화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한 후 해당 시기별로 관련 문헌과 법령의 제·개정 상황을 점검하여 북한의 법치관 변화와 법제 동향을 분석한다.

북한 법제 동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북한의 법률출판사가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2012)』(이하 “북한법전”이라 한다)에 수록된 법령의 제·개정 현황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법전은 북한의 최근 공식자료로서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북한 기업법제의 현황과 향후 동향을 파악하는데 유용성을 갖는다.<sup>6</sup>

## 1. 북한사회의 변천과 분석대상 시기의 구분

### 가. 북한사회의 변천

북한은 사회주의 동맹국가인 소련, 중국에 의한 경제원조가 비교적 활발하였던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소 데탕트 시기 이전까지를 정치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이 강했던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원칙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이념이 강조되었으며, 1950년대 무상원조와 차관을 통하여 외형적 경제성장

<sup>5</sup> 김일성,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217~218; 허경일, “법의 효력범위를 규정하는 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 법학』, 제59권 제4호(루게 480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3), p. 136; 리경철, “법규정리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 법학』, 제50권 제3호(루게 369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4), p. 61 참조.

<sup>6</sup> 다만, 동 법전은 폐지된 법률과 하위입법, 비공개 법령 등을 수록하지 않고 있어 실제 법령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점을 일러둔다.

을 보여 왔다. 1960년대 초에 한차례의 집중적인 법규 정리사업이 진행되기도 하였지만,<sup>7</sup> 법령으로 채택되었으면서도 “법” 또는 “법령”의 명칭이 아닌 “결정서”, “~할데 대하여”와 같은 명칭이 혼용<sup>8</sup>되는 등 북한법제는 전반적으로 초보적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70년대부터 주체사상 강조,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이 급물살을 이뤘던 1990년 이전까지의 시기를 구분해 볼 수 있다. 북한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1976년 8·18 사건을 거치며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길을 추구하였다. 이 시기에 남한은 중국, 러시아(구(舊)소련)와 국교를 정상화하였지만 북한은 고립의 상황에서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하는 변형된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의 경제는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1970년대 중반 외채문제가 발생한 이후 1987년 서방세계 채권은행단에 의해 외채상환 불능 상태임이 공식 선언되었다. 한편 법제정비에 있어서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후 차츰 법령 제정에 관심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개방 움직임에 자극받은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자본의 유치를 모색하기도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외국자본의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1991년 나진시와 선봉군 일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는 경제특구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접근하였다. 경제특구 등을 통한 대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투자법제를 본격적으로 마련하면서 그 밖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법제정비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북한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대외투자 유치에 보다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2002년 북한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실시하여 ‘평균주의 타파’와 ‘변돈에 의한 평가’라는 원칙을 내세워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수용하였다.<sup>9</sup> 2002년 9월 신의주, 2002년 10월 금강산, 2002년 11월 개성 지역을 경제특구로 추가하기

<sup>7</sup> 리경철, 위의 논문, pp. 62~63.

<sup>8</sup> 유옥,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 이해방법 - 북한 헌법상의 법령·정령·결정 등 입법형식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호 (법무부, 2011.5), pp. 68~70 참조; 한편 김일성은 “법이란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 같은것만이 아닙니다. 인민경제계획도 법이며 국가재정예산도 법입니다. 이것은 모두다 국가의 정책과 시책들을 법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김일성,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p. 222)라고 하여 이 시기에 북한은 법령과 행정적 행위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up>9</sup>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04>> 참조.

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관련법령 제정이 수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는 여전히 부진하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 그 동안 공식적으로 허용했던 종합시장에 대한 규제정책이 실패하고, 2013년 북한 전역으로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별다른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법제 정비를 진행하였다.<sup>10</sup> 경제특구와 외국인투자에 관한 다양한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등 새롭게 제정된 법만도 171개에 이르고 있다.

## 나. 분석대상 시기의 구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은 크게 1950~1960년대, 1970~1980년대, 1990년~현재로 크게 세 가지 국면의 시기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먼저, 북한 정권수립 이후 정치·경제 환경이 북한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1950~1960년대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한 사회주의적 법치주의가 존중될 수 있었던 환경적 특성을 갖는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70~1980년대로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인해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체제붕괴의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 종래 전통적 사회주의에서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채택함으로써 체제 단속을 강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세 번째 시기는 1990년 이후 현재까지로 국제적 고립 탈피와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대한 접근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시기이다. 이미 국제사회와 경제교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므로 북한의 법치관이 종래 전통적 사회주의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업을 포함한 경제 관련 법제의 개편도 확연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이다.

<sup>10</sup> 유옥도 “1990년대에 들어 ‘법’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북한사회의 대응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유옥,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 법 이해방법 -북한 헌법상의 법령·정령·결정 등 입법형식을 중심으로-,” p. 59.

## 2. 시기별 법치관의 변화와 법제 동향

### 가. 제1기(1950~1960년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 하에서 법제는 경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변형되는 것으로 경제관계의 하위에 존재하며, 지배계급이 무산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었다.<sup>11</sup>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법의 존재는 불필요하다.<sup>12</sup> 하지만, 사회주의 단계에서 법제의 존재는 인정되었는데, 이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것으로 과도적 성격을 갖는다.

초기 북한법도 이러한 기본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었다. 1948년 제정된 사회주의 북한헌법은 스탈린 헌법의 ‘민주적인 특성’을 반영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이념적 기초에서 당시 김일성은 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우리의 법은 사회주의사회의 법이며,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국가주권의 법입니다. 법은 정치의 한 개의 표현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 국가의 정책은 우리 당의 정책입니다. ……우리는 오직 법을 우리 당이 요구하는 계급적립장에서, 다시말하면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립장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며 적용하라는것을 강조할따름입니다. ……법은 전적으로 당의 정책을 실현하며 당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것이기때문에 당의 명도를 받지 않고서는 법을 옳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sup>13</sup>

즉, 이 시기의 북한 당국은 법을 당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정책을 포괄적으로 구현하면서 사회생활 전반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방편이자 국가지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sup>14</sup> 하지만 이 같은 북한 당국의 법제 인식이 북한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 기간 중에 제정된 법률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1963년 10월 9일 채택된 국적법이 있으며, 1950년 이전에 채택된 법은 토지개혁실시에 대한 임시조치법, 사회보험법, 비료취체임시조치법 등 40개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sup>15</sup> 이는 당시 북한법제가 주

<sup>11</sup> Tom Bottomore 외, 김은진 편, 『마르크스 사상사전』 (서울: 청아출판사, 1988), pp. 222~225 참조.

<sup>12</sup> Maureen Cain and Alan Hunt, *Marx and Engels on Law* (London: Academic Press, 1979), pp. 103~104 참조.

<sup>13</sup> 김일성,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pp. 219~222.

<sup>14</sup> 방계문, “공화국 법은 우리 당 정책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공화국 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2.30), pp. 2~8 참조.

로 전후(戰後) 경제복구와 사회주의 기초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데 따른 것으로 북한 당국의 법제에 관한 인식이 북한사회 저변에까지 파급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제2기(1970~1980년대)

사회주의 국가 간 연대의 해체와 체제전환 속에 북한은 사회결속과 체제유지를 위하여 주체사상을 이념화하고, 이를 북한사회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정립하였다.<sup>16</sup> 1960년대 말부터 주체사상이 강조된 이후 1970년대 들어 주체사상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초기 법치관 또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주체사상의 강조에 따라 북한의 법치관도 과거 사회주의 전통적 법치관에서 더 나아가 소위 “주체의 법리론”을 통한 독자성을 보이고 있었다. 법익은 모든 개개인의 자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령의 영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로 유일지배체제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주민의 자주성에 기초하여 법제를 사회저변에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당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보았던 종래 북한의 법에 관한 인식도 유일지배체제 강조와 함께 한층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sup>17</sup>

주체의 법리론에 의한 법치관은 사람을 사회적 관계에 의해 제약받는 것으로 보고 법의 일반적인 규제대상을 사회관계라고 규정하였던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치관에서 진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모든 법률적 제 현상의 본질과 내용은 사회관계가 아닌 사람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규정되는 것으로서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역할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sup>18</sup> 이는 특정계급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하였던 종래 전통적 사회주의에 대한 수정적 태도이다. 종래 법이

<sup>15</sup> 1950년 이전에 임시인민위원회 결정으로 채택된 법은 3건이며, 인민위원회 법령으로 채택된 법은 15건, 그 밖에 ‘법령’이라는 명칭으로 채택된 것이 21건 가량으로 각각의 법령 명칭과 제정 시기는 유육,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 이해방법 -북한 헌법상의 법령·정령·결정 등 입법형식을 중심으로-,” p. 58 참조.

<sup>16</sup> 차동관·김대규, “북한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 『서라벌대학교 논문집』, 제8집(서라벌대학교, 1994.8), p. 56 참조.

<sup>17</sup> 심형일은 사회주의법의 혁명적 본질에 관한 기술에서 우선적으로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보장하는 새형의 법이라는 점을 설명한 다음, 사회주의법이 당정책의 한 표현형식이며 실현 수단임을 설명하고 있는 바, 이 시기에도 북한의 법제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제2판(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3.25), pp. 189~205 참조.

<sup>18</sup> 위의 책, pp. 48~52. 심형일은 그의 책에서 북한법제의 근본원리, 본질과 의미, 기능과 적용 등 모든 법제분야의 논의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별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특정계급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도구에 불과하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계층, 계급의 인민대중에 의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sup>19</sup> 발전시키기 위한 일종의 질서 즉, 일상적 ‘제도(制度)’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1982년 김정일은 사회주의헌법 공포 10주년 기념연설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를 주장함으로써 주체의 법리론의 실천을 강조하였는데,<sup>20</sup> 동 연설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법규범과 규정 완성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모든 사회성원들의 사회주의 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법무생활은 국가의 법 질서에 따르는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율생활이며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공동생활을 실현해가도록 하는 국가적인 조직생활입니다.<sup>21</sup>

법규범과 규정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인 것만큼 법제정사업을 잘하여야 법무생활을 강화해나갈 수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법제정방침에 따라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 현실의 요구를 옹계 반영하여 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법규범과 규정들을 만들며 지금 있는 법규범과 규정들도 더욱 완성해나가야 합니다.<sup>22</sup>

이는 당시 사회결속과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주체의 법리론을 실제생활에 적용하기 위하여 인민대중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조했던 것으로 이해된다.<sup>23</sup> 즉,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을 통하여 주민을 교육하고 개조하고, 경제문화 건설을 도모하였다.<sup>24</sup>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법무생활지도기구를 구성

<sup>19</sup> “북한이 국제사회주의가 급격하게 몰락한 시기인 1992년에 인민민주주의로 환원한 것은 노동계급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급계층의 주민들을 ‘우리식 사회주의’,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로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관세 외 3인, 『북한 지식 사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pp. 656~657.

<sup>20</sup> ‘사회주의적 법무생활론’이라는 용어가 나타난 것은 1977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공포 5주년을 맞이하여 김일성이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서이다. 김도균,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法治)론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pp. 504~505 참조.

<sup>21</sup>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1982년 12월 15일)”, 『김정일선집 10』, 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6.20), p. 133; 김경현,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선군시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 법학』, 제55권 제2호(루계 426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09), p. 104.

<sup>22</sup> 김정일, 위의 논문, p. 146.

<sup>23</sup>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pp. 311~312 참조.

<sup>24</sup> 서창섭, 『법건설경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새 사회건설에서 이룩한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p. 3 참조.

하여 법의 준수집행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사회적 질서유지 기능과 법의 준수집행 보장 기능을 담당하는 “인민보안기관”, “사법검찰기관”, “재판기관”과 “중재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는 주로 법 준수집행을 위한 국가의 지도, 사회질서 유지와 관련성을 갖는 지방주권기관법, 재판소구성법, 민사소송법 등을 포함하여 14개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 다. 제3기(1990년대~현재)

주체의 법리론에서 시작하여 그 실천론으로 강조된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은 김정일 집권기인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주의법제사업”으로 가시화되었다.<sup>25</sup> 사회주의법제사업은 새로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며, 사회제도의 형성·수립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sup>26</sup> 이와 함께 “혁명적 준법기풍”의 확립을 위한 주민교양도 강조되었다.<sup>27</sup> 이 시기에 법제는 “법규범과 규정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위준칙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담보되며 사회적질서와 제도확립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sup>28</sup>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법의 인민적성격으로부터 법준수가 근로인민 대중자신을 위한 것”,<sup>29</sup> “법질서는 또한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안전을 유지옹호하는 것”<sup>30</sup>으로 표현되고 있다. 결국, 법은 최소한 북한주민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회적 규범이며,<sup>31</sup> 북한사회의 저변에까지 법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sup>25</sup> 2000년 이전에 사회주의법제사업을 강조하는 논문(진유현, “사회주의법제사업의 본질과 기본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 법학』, 제43권 제3호(루계 283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7); 진유현, “사회주의법제정의 합법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 법학』, 제44권 제4호(루계 287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8), 2000년 이후에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를 주장하는 논문(김경현,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선군시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이 게재되었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사회주의 법무생활 강조시기와 사회주의법제사업 강조시기를 선후관계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sup>26</sup> 진유현, “사회주의법제사업의 본질과 기본내용,” p. 50 참조.

<sup>27</sup> 김경현,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선군시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 p. 108 참조.  
<sup>28</sup> 위의 논문, p. 106.

<sup>29</sup> 황금철, “사회주의준법성의 본질과 그 강화의 필요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 법학』, 제44권 제4호(루계 300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8), p. 44.

<sup>30</sup> 진명현, “법질서의 본질적특징과 역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 법학』, 제58권 제4호(루계 468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12), p. 105.

<sup>31</sup> 김봉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 법학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8), p. 13 참조.

한편, 1992년 개정헌법 제18조 제3항에서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는 규정을 둔 이후 법령제정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또한 혁명적 준법기풍 마련을 위한 주민교양 활동도 적극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이 시기 제정법은 경제부문에 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특구와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와 관련이 깊다.<sup>32</sup> 이에 따라 정치적 선언이나 추상적 내용을 담고 있는 기존 법령에 비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서도 법이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행동의 준칙으로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형식적인 법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사회든 법은 사회영위의 기초이며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sup>33</sup> 특히 경제적 필요에 의한 대외개방 부문의 법제에서는 국제사회의 요구수준에 부응할 정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려는 노력도 확인된다.<sup>34</sup>

1990년 이후 2012년 이전까지 총 171개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현행 법률은 총 187개로 1990년 이후에 제정된 법률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조사대상 법령의 91.4%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기는 법률 제정과 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이다. 동 기간 중의 입법활동의 변화와 어느 분야에서 입법활동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0년대(1990~1999년 말)와 2000년대(2000~2009년 말) 각 10년 기간을 비교 대상기간으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이 시기에 눈에 띄는 증가를 보이는 분야는 「계획, 노동, 재산관리부문」<sup>35</sup>과 「재정, 금융, 보험부문」<sup>36</sup>으로서 기업관련 영역을 포함한 북한의 경제와 밀접한 영역이라는 특성을 나타낸다.

<sup>32</sup> 진명현, “법질서의 본질적특징과 역할,” p. 104 참조.

<sup>33</sup> 윤대규, “북한 사회에서의 법의 성격,” 『북한법연구』, 제6호 (북한법연구회, 2003), p. 20; 김근식은 “물론 법의 해석적용은 그자체가 법조문에 표현된 문구나 수자나 문장을 떠날 수 없으며 그에 엄격히 준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근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주체의 사상리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 법학』, 제43권 제1호(루계 275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7), p. 44 참조.

<sup>34</sup> 허경일은 “법의 시간적효력과 관련하여 불소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행위의 기준을 제시해준 다음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제재를 가하는 것이 리치에 맞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세계 대다수 나라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불소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요구수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허경일, “법의 효력범위를 규정하는 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 법학』, 제59권 제4호(루계 480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13), pp. 137~138.

<sup>35</sup> 사회주의노동법, 인민경제계획법,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설비관리법,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노동정책법, 노동보호법, 기업소법, 자재관리법.

<sup>36</sup> 회화관리법, 보험법, 재정법, 화폐유통법, 회계법, 중앙은행법, 국가예산수입법, 상업은행법, 자금세척방지법, 회계검증법.

<표> 분야별 법 제정 및 개정 현황 비교

분 류 <sup>주)</sup>	제 정					개 정(수정보총)				
	1990~1999		2000~2009		전기 대비 (%)	1990~1999		2000~2009		전기 대비 (%)
	건수 (건)	비중 (%)	건수 (건)	비중 (%)		건수 (건)	비중 (%)	건수 (건)	비중 (%)	
주권부문	3	41	0	-	-	7	84	11	6.1	57.1
행정부문	2	27	2	26	0.0	1	1.2	3	1.7	200.0
형민사부문	5	68	2	26	△60.0	5	6.0	13	7.2	160.0
재판, 인민보안부문	3	41	5	6.5	66.7	3	3.6	6	3.3	100.0
계획, 노동, 재산관리부문	1	14	6	7.8	500.0	1	1.2	5	2.8	400.0
에너지, 금속, 지하자원부문	4	54	6	7.8	50.0	5	6.0	10	5.5	100.0
교통운수부문	2	27	8	10.4	300.0	5	6.0	10	5.5	100.0
농업, 수산부문	5	68	4	5.2	△20.0	3	3.6	4	2.2	33.3
계량, 규격, 품질감독부문	6	81	3	3.9	△50.0	7	8.4	10	5.5	42.9
인민봉사, 건설, 도시경영부문	6	81	3	3.9	△50.0	5	6.0	15	8.3	200.0
국토, 환경보호부문	6	81	7	9.1	16.7	7	8.4	18	9.9	157.1
재정, 금융, 보험부문	4	54	6	7.8	50.0	3	3.6	16	8.8	433.3
과학기술, 지적소유권, 체신부문	4	54	8	10.4	100.0	5	6.0	7	3.9	40.0
교육, 문화, 체육부문	5	68	0	0.0	-	5	6.0	4	2.2	△20.0
보건부문	5	68	3	3.9	△40.0	6	7.2	10	5.5	66.7
사회복지부문	0	0.0	4	5.2	-	0	0.0	2	1.1	-
북남경제협력부문	0	0.0	2	2.6	-	0	0.0	1	0.6	-
외교, 대외경제부문	13	17.6	8	10.4	△38.5	15	18.1	36	19.9	140.0
총 계	74	100.0	77	100.0	4.1	83	100.0	181	100.0	118.1

주: 북한법전상의 분류 체계에 따른 것임.

### Ⅲ. 기업에 관한 인식과 기업관계 법령에 관한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법제 동향은 기업을 포함한 경제관련 입법의 증가와 준법 강조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는 기업법제 개편에 우호적 정책환경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향후 북한의 기업법제 개편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기업에 대한 인식과 현재 기업법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기업은 당의 지도에 따라 운영되어 오는 계

획경제의 하부조직으로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자율경영에 입각한 기업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념적 차이에 따라 생산요소의 소유주체, 기업의 이윤추구와 그 이윤의 사회적 환원 메커니즘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제도화되어 왔다. 북한은 1960년대 대안의 사업체제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를 통하여 계획경제 체제에 입각한 기업제도를 갖추었지만, 연성예산(soft budget)의 문제 등으로 계획이 기대와 달리 생산효율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부족경제(shortage economy)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진영국가의 원조를 통한 경제유지도 197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 경제고립을 겪으면서 고스란히 북한이 자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기업의 독립채산제, 자력갱생론이 확산되었는데, 이는 주체사상의 강조 시점과 어느 정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의 생산효율 증대를 위하여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한 기업관리체제 개선을 시도하였으며, 외국기업의 북한 내 경영활동을 허용하는 등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기업제도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국가 모두 국민경제에서 주된 생산주체는 기업이며, 효율적 생산을 통한 부의 분배,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북한의 경우도 정치, 경제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제도에 관한 정책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남북 간의 기업제도에 관한 이념적 차이를 포함하여 북한사회의 문헌에 나타나 있는 기업제도에 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 현행 북한의 기업관련 법제를 일별해 본다. 이는 기업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는 사회적 수용 환경을 파악하는 의미를 갖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법제 개편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1. 기업에 관한 인식

### 가. 기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세 가지 주체로 개인 또는 가계, 기업, 정부 및 공공부문을 들 수 있는데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도 생산이 부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기업이 생산자이면서 유통도 담당하는 유일한 생산의 담당자이다.<sup>37</sup> 그러나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이 전적으로 강조되는 계획경제 체제 하의 북한에서 기업을

<sup>37</sup>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서울: 한울, 2010), p. 303 참조.

지칭하는 “기업소”의 의미는 자본주의 기업과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북한 경제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업소의 의미를 자본주의 기업과 구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소는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조직진행하는 경영단위. 기업소는 공장, 광산, 탄광 등과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기업소가 독립적채산에 기초하는 경영단위로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공장, 광산, 탄광, 조선소 등은 생산의 조직기술적 단위로서의 특성을 반영한다. 기업소의 경영목적은 사회제도에 따라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적기업소는 없어졌고 사회주의적기업소만 있다. 사회주의 기업소는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기업소로 나누어진다. 사회주의국영기업소는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에 기초하여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적지도 밑에 운영되며 그것은 형식상 관리운영에서 경영상 독자성을 가진다.<sup>38</sup>

자본주의기업소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임금로동자의 착취에 기초하여 리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소. 자본주의기업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그것이 자본가의 사적소유로 되어있다는데 있다. 자본가는 바로 이것으로 하여 임금로동자를 고용할수 있으며 그의 잉여로동을 착취하여 리윤을 얻을수 있는것이다. 자본주의하에서 기업소는 개별적자본가에 의하여 운영될뿐아니라 주식회사나 관영기업의 경우와 같이 자본가들의 집단 또는 부르주아국가에 의하여 운영될수도 있다.<sup>39</sup>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본 북한의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독립채산적 경영활동을 하는 경영의 단위로서 생산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도 유사하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부정, 국가에 의한 유일적 계획에 의한 경영, 기업의 생산활동의 결과물 즉, 이윤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나. 기업에 대한 인식

북한은 기업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경제적 역할에 관해서는 그 생산 주체로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의 사적소유 강화, 착취적 성향과 같은 자본주의 기업의 병리현상만을 부각하여 이를 철저히 부정한다.

<sup>38</sup>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322.

<sup>39</sup>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379.

이에 관한 문헌을 기초로 각각의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관련하여 북한 당국은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를 요약해 보면, 대안의 사업체계에 입각한 독립채산제 실시,<sup>40</sup> 기업의 증산 절약,<sup>41</sup> 적정한 재정관리<sup>42</sup>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증진을 역설한다. 더 나아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반영하여 기업에 대해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한다거나 노동에 대한 물질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sup>43</sup> 이는 기업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자본주의 기업의 자율경영과 성과보상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북한 지도층의 인식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향후 북한의 기업제도 개선 폭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둘째, 종래의 기업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면, 자본주의 기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 기업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착취를 비판하고 있으며,<sup>44</sup> 이들 비판론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착취,<sup>45</sup> 정보산업시대의 근로자 착취<sup>46</sup> 등 폭넓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이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에서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것으로 풀이

<sup>40</sup> 김정일,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1991년 7월 1일),” 『김정일선집 15』 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2.15), p. 65 참조.

<sup>41</sup> 김정일, “국가예산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집행할데 대하여(1990년 9월 13일),” 『김정일선집 10』 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1.25), p. 169 참조.

<sup>42</sup> 위의 논문, p. 175 참조.

<sup>43</sup>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으로부터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는 기업소가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며 노동에 대한 물질적자극과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을 경제관리의 수단으로 리용하게 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만 절대화하고 그 과도적 성격을 무시하여서는 안됩니다. ……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반영한 경제법칙과 범주를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본성에 맞게 옹계 리용하는것입니다.” 김정일,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1991년 7월 1일),” pp. 53~54.

<sup>44</sup> 리경영, “다국적기업체의 발생과 기본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47권 제2호(루계 328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01), pp. 75~80; 김홍일, “자본주의주식회사의 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50권, 제2호(루계 63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04), pp. 57~62; 김홍일, “현대자본주의하에서 자본참가를 통한 기업계열구조의 형성과 그 취약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51권 제2호(루계 376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05), pp. 68~72; 김홍일, “현대자본주의주식회사제도에 대한 부르조아변호론의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55권 제2호(루계 42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09), pp. 123~126; 박정철, “현시기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적용하고있는 회사식경제운영방식의 특징과 그 허황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58권 제2호(루계 460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12), pp. 152~155.

<sup>45</sup> 황한욱, “세계적판도에서 높은 리운을 얻기 위한 다국적기업들의 약탈한 경영전략,” 『경제연구』, 2010년 제4호(루계 제149호), (평양: 과학백과사, 2010), p. 52.

<sup>46</sup> 정경준, “정보산업시대 독점적고물리윤법칙 작용조건에서의 변화,” 『경제연구』, 2013년 제1호(루계 제158호), (평양: 과학백과사, 2013) 참조.

된다.

그러나 최근의 기업 관련 문헌에서는 합병, 합작사업, 외국인투자 기업과 관련한 기술도입 등 방안마련,<sup>47</sup> 기업전략,<sup>48</sup> 기업소의 생산 정상화,<sup>49</sup> 효율적 재무관리<sup>50</sup>와 같은 기업의 생산성 증진 내지 외자유치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기업에 대한 강한 비판에서 벗어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북한의 제도적 지원 등의 개선 사항을 제시<sup>51</sup>하는 등 기업 관련 법제 변화에 주목할 만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 2. 기업 관계법령의 내용

북한은 기업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기업소법을 제정하였으나, 기업의 자율경영을 인정하지 않고, 계획에 의한 경영이라는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외국기업을 의식하여 기업소법의 특별법으로서 입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에서도 국제사회가 갖추고 있는 기업법제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외국인투자법제상에 나타나 있는 기업 관련 조문은 기업의 창설이나, 해산 및 청산, 회계 등을 단편적으로 또는 필요 최소한만을 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우리상법상 회사편의 내용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북한 기업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소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외국인투자법제상에 나타나 있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조문들을 검토한다.

<sup>47</sup> 김철준, “합병, 합작은 선진기술도입의 중요공간,” 『경제연구』, 2007년 제1호(루계 제134호), (평양: 과학백과사, 2007), pp. 31~34; 김금희, “합병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제적경제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2007년 제1호(루계 제134호), (평양: 과학백과사, 2007), pp. 35~36; 로명성,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 운영하는데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4년 제2호(루계 제163호), (평양: 과학백과사, 2014), pp. 50~52.

<sup>48</sup> 박흥규, “경제전략, 기업전략에 대한 옳은 리해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08년 제3호(루계 제140호), (평양: 과학백과사, 2008), pp. 12~15.

<sup>49</sup> 김정철, “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2011년 제1호(루계 제150호), (평양: 과학백과사, 2011), pp. 23~24.

<sup>50</sup> 김성희, “독립채산제기업소 류동자금조직의 기본요구,” 『경제연구』, 2011년 제2호(루계 제151호), (평양: 과학백과사, 2011), pp. 48~49; 장영란, “상업기업소의 경영자금리용에서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3년 제2호(루계 제159호), (평양: 과학백과사, 2013), pp. 37~38; 오영애, “상업기업소소득의 본질과 특성,” 『경제연구』, 2014년 제2호(루계 제163호), (평양: 과학백과사, 2014), pp. 42~43.

<sup>51</sup> 손홍도,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투자활동에 대한 일반적분석,” 『경제연구』, 2013년 제3호(루계 제160호), (평양: 과학백과사, 2013), pp. 49~50.



## 가. 기업소법

2010년 11월 11일 제정된 기업소법은 5개장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기업소의 조직, 관리기구, 경영활동과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규정하고 있어,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의 기업소는 남한의 사적영역의 기업과는 달리 국유기업의 성격을 갖는다.

총칙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는 일반원칙 규정을 두고 있다. 제1조에서 기업소법의 목적은 기업소의 조직과 경영을 통하여 경제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업소란 “일정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활동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단위”로 규정하고(제2조), 국가는 기업소의 조직기준을 바로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규율하고 있다(제3조). 아울러,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지도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제2장은 기업소의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소조직기관에는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속하도록 하였으며(제11조), 기업소조직기관은 기업소조직 신청을 받아 심의, 기업소등록과 해산 권한을 갖는다. 특히 국가의 정책과 현실의 요구에 비춰 불합리하거나 전망성이 없는 기업소를 정리하는 규정을 둬으로써(제18조) 기업의 생산성을 고려한 북한의 기업정책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3장은 기업소의 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지배인, 기사장, 부지배인과 같은 필요한 관리일군에 관한 사항과 관리부서를 통한 사업분담, 사업준칙작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우리상법상 정관 내지 내규에 해당하는 기업소사업준칙을 종업원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점이다(제25조, 제26조). 일반적으로 정부기관 내지 공기업의 정관 등의 제정 권한은 정부가 갖는데 대하여 근로자가 그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한 것은 북한사회의 노동의 가치에 관한 인식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장은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소는 경영전략을 작성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제29조 내지 제30조). 또한 생산공정의 관리, 기술개건과 관리, 기술자 및 전문가 등의 양성, 품질 및 설비, 동력 관리, 전력이용, 자재관리, 재산실사, 계획에 따른 제품판매, 로력관리, 재정관리 등 기업소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제31조 내지 제49조). 특히 기업소에 대하여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 부식물공급문제, 빨감문제 등의 생활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부가함으로써 기업소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상당부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기업소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도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소사업에 대해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가 지도통제를 담당하며,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정기적으로 해당 지도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등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업소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등 경영활동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이 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재제 또는 형사책임 규정을 둬으로써 법의 규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현실 등을 감안할 때 동법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나. 외국인투자법제상 기업 관련 규정

### (1) 검토대상

북한의 외국인투자법령 가운데 중 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기업종류 및 기구, 설립, 출자, 권리에 관한 규정 내용을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이하에서는 경제개발구법(2013.5.29. 채택),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11.12.3. 수정보충),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2011.12.3. 채택), 개성공업지구법(2003.4.24. 수정보충), 금강산관광특구법(2011.5.31. 채택), 외국인투자법(2011.11.29. 수정보충), 외국인투자기업등록법(2011.12.21. 수정보충), 합병법(2011.11.29. 수정보충), 합작법(2011.11.29. 수정보충), 외국인기업법(2011.11.29. 수정보충)과 외국투자기업 관련 개별법의 하위 규정인 합병법 시행규정(2005.8.1. 수정), 합작법 시행규정(2004.12.28. 수정보충),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2005.8.1. 수정)상에 나타나 있는 조문의 내용 또는 유사 조문 간의 내용을 비교·검토한다.

### (2) 기업의 종류 및 기구

외국인투자법상 기업의 종류는 합영기업, 합작기업과 외국인기업으로 구분된다(외국인투자법 제2조). 이는 외국인투자자의 자본과 기업의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 회사의 종류를 인적요소와 자본요소의 결합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외국의 기업법제와 확연히 구별된다. 이들 외국투자기업은 북한 또는 외국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 등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회사를 두거나, 외국기업과 연합

할 수 있다(외국인투자법 제13조). 그러나 자회사 설립과 외국기업과의 연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여전히 법제도 밖에서 규율되거나, 국제 관행 또는 필요에 따라 북한 당국의 개입이 가능하므로 법적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합영기업에는 최고결의기관인 이사회를 둔다(합영법 제16조). 합영기업의 이사회에는 규약의 수정보충, 기업의 발전 대책, 등록자본의 증가, 경영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기업의 해산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서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다르며,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주주총회와 유사하다.<sup>52</sup> 또한, 우리 상법상 감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재정검열원을 두고 있다.<sup>53</sup> 한편, 외국인투자가의 자본적 참가만을 허용하는 합작기업이나, 직접 경영을 허용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법상 필요적 기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sup>54</sup> 다만, 합작법 시행규정에서 합작계약에 포함될 사항으로 경영관리기구를 명시하고 있으며(규정 제16조),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에서 외국인기업의 규약에 기업의 기구 및 그 직능(이사장, 사장, 회계 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무와 권한)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합영기업의 경우 그 경영을 북한 측에서 일부를 관여하게 되므로 필요적 기관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합작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을 전적으로 북한 측이 담당하게 되므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기업의 경우는 이사장 등의 임무와 권한을 규약에 포함하라는 규정만을 두고 있어 기구 구성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기업소법 제10조), 기업소법상의 관리기구를 둘 법상의 의무가 없음은 명백하다.

### (3) 기업의 창설(설립)

북한민법은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기업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창설된 것으로 인정한다(민법 제12조). 외국투자기업은 외국투자기업등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이 외국투자기업의 창설등록을 담당하며, 기업소제지의 도(직

<sup>52</sup> 안성조, “북한 외국인투자기업법의 체계론적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 73.

<sup>53</sup>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합영법 시행규정(2005.1.17. 수정된 것) 제4장 참조.

<sup>54</sup> 합작법 제17조는 임의적 기구로서 합작당사자에 의한 비상설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시) 인민위원회가 주소등록을, 해당 재정기관이 세무등록을 해당 세관이 세관등록을 각각 담당한다(외국투자기업등록법 제3조). 다만, 특수경제지대의 경우 창설승인을 받은 외국투자기업은 특수경제지대와 관련한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다(외국투자기업등록법 제8조).<sup>55</sup> 특히 등록한 날부터 법인격이 부여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외국투자기업등록법 제11조), 창설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승인 완료 후 등록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거래 활성화는 물론 그 거래상대방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는데 미흡하다.

한편, 특수경제지대 관련 개별법과 외국투자기업 관련 개별법의 내용의 거의 동일하거나, 소폭의 차이를 보이는 등 규정의 통일성과 일관성 결여에 따른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이 기존의 특수경제지대에 관련 개별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됨에 따라, 각 법령 간의 체계 및 상호 관계를 더욱 모호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들 유사 법령 간의 통합, 조정이 요구된다.

#### (4) 등록자본의 출자

기업소는 국가의 조치에 따라 조직되며(기업소법 제12조), 국가예산에 의한 계획경제에 의하므로 별도의 자본 출자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외국자본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소 등록에 따른 출자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합영 및 합작기업의 경우 계약문건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며(합영법 시행규정 제29조; 합작법 시행규정 제36조), 외국인기업의 경우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 데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8조). 출자 재산은 금전 이외에 현물 및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포함한다(합영법 시행규정 제30조; 합작법 시행규정 제37조;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32조). 출자 대상인 현물재산 및 무체재산권의 범위는 각각의 시행규정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자는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영 및 합작 기업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으로 출자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39조, 제40조; 합작법 시행규정 제47조, 제48조;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9조). 출자 기일을

<sup>55</sup> 다만, 금강산관광특구법상 기업의 창설신청 규정은 생략되어 있으며,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요구를 지켜야 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어(동법 제25조),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반할 경우 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출자를 정한 기일 내에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합병 및 합작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41조, 제42조; 합작법 시행규정 제49조, 제50조). 외국인기업의 경우 출자 연장기간과 취소 가능 여부, 손해배상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는 사유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합병 및 합작기업이 북한 측과 공동 출자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 운영이 가능하데 반하여 외국인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출자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 보호, 동 기업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충실의 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우리상법이 발기인에 대하여 납입담보책임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sup>56</sup>과 같이 등록자본의 출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출자담보책임과 합병 및 합작 상대방에 국한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등록자본의 증감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승인 내지 변경등록을 통하여 증가는 허용하나, 감소는 일체 금지되고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46조; 합작법 시행규정 제54조;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30조). 그러나 기업이 생산활동 등에 실제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자기자본이익율 등이 하락하는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등록자본의 감소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5) 기업의 권리

기업은 법인으로서 일반적으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능력을 갖는다. 다만, 자연인이 아니므로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는 제한되며, 법 정책적 목적에 따른 권리 제약도 가능하다. 그 밖에 기업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권리제한의 가부에 관해서는 학설상 이견이 있지만, 기업 활동의 현실을 반영하여 목적의 범위를 문자에 구애됨이 없이 넓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학설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sup>57</sup> 북한의 경우 기업소도 민법의 규제대상의 당사자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므로(민법 제2조), 기업소가 일반적 권리능력을

<sup>56</sup> 우리상법은 회사성립 후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이 연대하여 납입하도록 규정하거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가하고 있다(상법 제321조, 제322조).

<sup>57</sup> 최준선, 『제7판 회사법』 (서울: 삼영사, 2012), p. 57.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획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기업소법이 적용되는 등 기업경영에 정부의 개입이 일상적이며, 법령의 규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권리의 범위가 상당히 제약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북한 법제의 특성에서 비롯하여 기업소법의 특례규정으로 특수경제지대법상 기업의 권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투자가는 경제무역지대에 회사, 지사, 사무소 등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라선 경제무역지대법 및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5조; 개성공업지구법 제3조), 기업의 권리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경영 및 관리질서와 생산계획, 판매계획, 재정계획을 세울 권리, 채용 및 임금기준과 지분형식, 생산물의 가격, 이윤의 분배 방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비법적인 간섭은 할 수 없으며 법규에 정해지지 않은 비용을 징수하거나 의무를 지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40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34조). 또한,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과 개인의 지적재산권은 법적보호를 받는다(라선경제무역지대법 72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48조). 그러나 특수경제지대법 가운데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특구법은 이러한 권리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이들 규정 사이에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sup>58</sup>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특례규정을 반대 해석해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령에는 이러한 기업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수경제지대 이외의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상기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북한 정부의 간섭이나, 권리제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한 사실상 외국인투자기업이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이외에서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sup>59</sup>

<sup>58</sup>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는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라는 일반 권리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특수경제지대법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금강산관광특구법은 이러한 일반적 권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들 특수경제지대법 간에 차이를 들만한 정책적 사유가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sup>59</sup> 2004년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라선·선봉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 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년 개정된 법에서는 ‘공화국 영역 안에서’로 단순화함으로써 투자지역의 제한을 철폐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 ‘공화국 영역 안에서’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하거나 ‘우리나라에서’로 변경함으로써 투자지역제한 철폐의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투자가가 자본의 전부를 투자한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지역’에 창설·운영될 것을 전제로 함으로써 여전히 투자지역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신현윤, “최근 북한 외국인투자관계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저스티스』, 통권 제131호 (한국법학원, 2012), pp. 281~282.

#### IV. 북한 기업법제의 개편방향

종래 북한 당국은 법제를 당에 의한 강력한 통치수단의 하나로 인식한데 머물고 있었다면, 혁명적 준법기풍 강조 등을 통하여 법제에 대한 주민교양을 확대하면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법제의 기능을 인식하기에 이른다. 이는 최소한 주민이 알고 있는 법제도의 틀을 이탈하여 당이 전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즉, 당의 정책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전통적 사회주의적 법치주의는 북한의 주체의 법리론을 거쳐 사회주의 법무생활론에 근거한 법령 제정의 확대, 혁명적 준법기풍에 의한 주민 교양의 확대를 통해 법적 안정성이 어느 시기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 보다 활발한 법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에 접어들면서 경제관련 입법이 확연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외교, 대외경제부문」과 「계획, 로동, 재산관리부문」, 「재정, 금융, 보험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기업활동을 포함한 경제관련 법제영역에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즉,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부를 수용하는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sup>60</sup> 어느 때보다 기업제도와 관련한 북한의 법제 개선도 보다 활발히 진척될 것이다. 다만, 기업을 포함한 경제관련 법제영역 밖의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은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체의 법리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는 사회주의 법무생활론도 여전히 법이 당의 통치수단이라는 점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sup>61</sup>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요구 등과 같은 환경적 변화

<sup>60</sup> “북한의 최근 입법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실용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근자에 제정 또는 개정된 북한의 법률들의 내용을 일별할 때,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줄어들고 객관적 사회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됨으로써... 앞으로 법에 의한 통치로의 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전망 -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에 대한 성찰,” 『통일과법률』, 창간호 (서울: 법무부, 2010), p. 76.

<sup>61</sup> 북한의 법이론가들의 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당과 수령,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는 것이 우리 법의 근본사명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법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김정현, 위의 논문, p. 105;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당과 국가활동, 법률활동을 비롯한 모든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은 물론 사회관계의 각이한 분야와 부문을 규제하는 모든 부문법도 철저히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제정하고 완성해나가야 한다.” 김원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주체의 사상리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4권 제2호(루계 41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08), p. 63.

가 없다면 주권, 행정 부문 등 체제유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법제분야에서 법치관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sup>62</sup>

한편, 기업에 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강하게 유지하였던 종래의 입장도 차츰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문헌에서 기업의 생산성 증진 내지 외자유치를 위한 북한 당국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확인되고 있다. 1990년대 특수경제지대 및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개별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수정이 있었고, 2010년에는 기업소법을 제정하는 등 그 동안 북한사회의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기업법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계획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듯 기업소법은 국가의 계획에 의한 국영기업에 관한 내용이며,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다른 나라 기업법제의 일부 내용을 외국인투자 및 특수경제지대법에 수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다양한 기업의 형태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고, 기업의 결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외국투자기업을 유인하는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창설에 관한 규정들이 개별 특수경제지대법과 외국인투자법에 각각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소폭의 차이점이 있어 각 법령 간의 체계 및 상호 관계가 모호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 밖에 기업 창설 등록진, 등록자본 출자 전에 외국투자기업과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활성화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며, 기업의 권리와 관련한 특수경제지대법상의 규정도 명백한 사유 없이 각 법령 간에 차이점이 발견된다.

향후 북한의 기업 관련 법제는 개별법 간의 공통 사항을 통합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합영, 합작 기업 등 기업 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되며, 외국투자기업이 북한에서 경영활동을 활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도 보강되어야 한다. 입법기술적으로는 특수경제지대별로 두고 있는 개별법을 통합하고, 외국투자기업에 관한 합영법, 합작법, 외국기업법의 통합법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통합 외국기업법 제정 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회사법상의 일반규정을 참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법치관의 변화와 경제분야 입법 수요의 증가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편에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sup>62</sup> 김도균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특정부문의 법제사업이 진행되지만 인권관련 부분에서는 법치의 원리가 더디게 이루어져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도균, 위의 논문, pp. 511~512 참조.



남북한이 진행하였던 법제분야의 경험은 향후 북한의 기업법제의 개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63</sup> 따라서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서 북한 기업법제의 개선점을 찾는 노력을 포함하여 우리 기업법제와 연계방안에 관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재정, 금융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폭넓은 법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남북 법제의 차이에 관한 양측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북한의 기업법제 등 경제분야 법제 개편과정에서 남북 법제 간 연계점을 찾는 공동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 접수: 10월 13일 ■ 심사: 10월 23일 ■ 채택: 11월 14일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국내 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8.  
 김철수. 『헌법학신론』. 서울: 박영사, 2009.  
 성낙인. 『헌법학』. 서울: 법문사, 2008.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서울: 한울, 2010.  
 이관세 외 3인. 『북한 지식 사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최준선. 『제7판 회사법』. 서울: 삼영사, 2012.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007.  
 Bottomore, Tom 외. 김은진 편. 『마르크스 사상사전』. 서울: 청아출판사, 1988.

#### 북한 문헌

- 김봉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 법학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8.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_\_\_\_\_.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3.25.

<sup>63</sup> 박정원, “개성공단의 행정법 규율과 법제정비,” (법무부, 2010), p. 30 참조: “개성공단의 법제 인프라는 남북한의 통합법제의 실험장. 북한의 경제개혁법제에 대한 선례 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박정원, “개성공단의 법제 인프라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제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8), p. 144.

서창섭. 『법건설경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새 사회건설에서 이룩한 경험』.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84.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2012년)』. 2012.

Cain, Maureen and Alan Hunt. *Marx and Engels on Law*. London: Academic Press, 1979.

## 2. 논문

### 국내 문헌

김도균.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法治)론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박정원. “개성공단의 법제 인프라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제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8.

\_\_\_\_\_. “개성공단의 행정법 규율과 법제정비.” 법무부, 2010.

박환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경희법학』. 제47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6.

신현윤. “최근 북한 외국인투자관계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저스티스』. 통권 제131호 (한국법학원), 2012.8.

안성조. “북한 외국인투자기업법의 체계론적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유 욱.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 이해방법 -북한 헌법상의 법령·정령·결정 등 입법형식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호 (법무부), 2011.5.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전망 -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에 대한 성찰.” 『통일과 법률』. 창간호 (법무부), 2010.

정용상. “중국어사법의 총론적 검토.” 『외대논총』. Vol. 27 (부산외국어대학교), 2003.

차동관김대규. “북한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 『서라벌대학교 논문집』. 제8집 (서라벌대학교), 1994.8.

### 북한 문헌

김경현.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선군시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5권 제2호(루계 426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교 출판사, 2009.

김근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주체의 사상 리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43권 제1호(루계 275호),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 1997.

김금희. “합영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제적경제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2007년 제1호(루계 제134호), 평양: 과학 백과사, 2007.

김성희. “독립채산제기업소 류동자금조직의 기본요구.” 『경제연구』. 2011년 제2호(루계

- 제151호), 평양: 과학백과사, 2011.
- 김원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주체의 사상 리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4권 제2호(루계 41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08.
- 김일성.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1958년 4월 29일).” 『김일성 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김정일. “국가예산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집행할데 대하여(1990년 9월 13일).” 『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1.25.
- \_\_\_\_\_.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1991년 7월 1일).” 『김정일선집 15』. 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2.15.
- \_\_\_\_\_.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1982년 12월 15일).” 『김정일선집 10』. 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6.20.
- 김정철. “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2011년 제1호(루계 제150호), 평양: 과학백과사, 2011.
- 김철준. “합영, 합작은 선진기술도입의 중요공간.” 『경제연구』. 2007년 제1호(루계 제134호), 평양: 과학백과사, 2007
- 김홍일. “자본주의주식회사의 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50권, 제2호(루계 63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04.
- \_\_\_\_\_. “현대자본주의하에서 자본참가를 통한 기업계렬구조의 형성과 그 취약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51권 제2호(루계 376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05.
- \_\_\_\_\_. “현대자본주의주식회사제도에 대한 부르조아변호론의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55권 제2호(루계 42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09.
- 로명성.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운영하는데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4년 제2호(루계 제163호), 평양: 과학백과사, 2014.
- 리경영. “다국적기업체의 발생과 기본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47권 제2호(루계 328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01.
- 리경철. “법규정리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0권 제3호(루계 369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04.
- 박정철. “현시기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회사식경제운영방식의 특징과 그 허황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58권 제2호(루계 460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12.
- 박흥규. “경제전략, 기업전략에 대한 옳은 리해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08년 제3호(루계 제140호), 평양: 과학백과사, 2008.
- 방계문. “공화국 법은 우리 당 정책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공화국 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2.30.
- 손홍도.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투자활동에 대한 일반적분석.” 『경제연구』. 2013년 제3호(루계 제160호), 평양: 과학백과사, 2013.
- 오영애. “상업기업소소득의 본질과 특성.” 『경제연구』. 2014년 제2호(루계 제163호), 평양:

- 과학백과사, 2014.
- 장영란. “상업기업소의 경영자금리용에서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3년 제2호(루계 제159호), 평양: 과학백과사, 2013.
- 진명현. “법질서의 본질적특징과 역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8권 제4호(루계 468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12.
- \_\_\_\_\_. “사회주의법제사업의 본질과 기본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43권 제3호(루계 283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7.
- 진유현. “사회주의법제정의 합법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44권 제4호(루계 287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8.
- 정경준. “정보산업시대 독점적고물리법칙 작용조건에서의 변화.” 『경제연구』. 2013년 제1호(루계 제158호), 평양: 과학백과사, 2013.
- 황금철. “사회주의준법성의 본질과 그 강화의 필요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44권 제4호(루계 300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8.
- 황한옥. “세계적판도에서 높은 리운을 얻기 위한 다국적기업들의 악랄한 경영전략.” 『경제연구』. 2010년 제4호(루계 제149호), 평양: 과학백과사, 2010.
- 허경일. “법의 효력범위를 규정하는 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9권 제4호(루계 480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13.

### 3. 기타자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maryMenuId=EC204>>.

Abstract

## Legislative Trends and Direction of the Enterprise Law Reform in North Korea

*Chan-Hong Park*

This study is focused on identifying and understanding the level of corporate legislation in North Korea through analyzing a wide range of North Korean literature including enterprise related law and then finding some implication on direction of enterprise law reform considering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recognized law as just one of the means of ruling. But recently they emphasiz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t leas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conomy. Moreover, after 1990 the economic legisl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position of a negative perspective about the corporate is gradually changing. Recently we can easily find the authorities' efforts of promoting productivity in the field of enterprise. However, it is still required to improve the North Korean enterprise and foreign investment laws.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various businesses are not established. Additionally, these laws are facing some problems of 'blurring regulatory', lack of guaranteeing the transaction stability, ect.

Therefor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current legislation considering some general terms, conditions and contents of legal stability. Integrating some similar legislation need to be adopted.

**Key Words:** Rule of Law in North Korea, Enterprise Act in North Korea, Trends of North Korea Legislation

